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657

2024년 2월 27일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3. 상정일자 :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 수정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엄동환)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과 인증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범위 확대

- 당초: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 변경: 「장애인등편의법」제10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 공건축물[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
-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건축물 포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 호 제1657호로 제출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을 확대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 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이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1).

¹⁾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²⁾(이하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u>신축</u>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³⁾

-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5년 1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 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해당 인증 대상이 신축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어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고⁴⁾ 이에 2021년 6월 국회는 시설을 <u>신축하는</u> 경우뿐 아니라 별동 중축, 전부 개축,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하였습니다.5)
- 동 개정조례안은 인증 대상 범위를 확대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나. 개정 조문에 대한 검토

1) 적용범위(안 제3조)에 대한 검토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15. 7. 29.] [법률 제13109호, 2015. 1. 28., 일부개정]

³⁾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u>신축</u>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u>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u>

⁴⁾ 보도자료: 공공시설 10곳 중 6.5곳,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미인증(더인디고, 2020.10.7.)

⁵⁾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u>의무적으로 인증(</u>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중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인증 대상을 교육청 건축물과 교육청 재정지원 사립학교 건축물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 건축물'에서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 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 건축물' 6)(신축・별동 증축・전부 개축・재축)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의 관련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법적안정성 및 자치법규 정비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상위법의 조항을 인용함에 있어 보편적·통상적 인 경우와 다르게 ① 상위법 조항의 제목까지 기재하였고(장애물 없 는 생활환경 인증) ② 조·항·호를 붙여 써야 함⁷⁾에도 불구하고 띄 어 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법률의 통일성과 자구의 체계성 측면에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 제2호 \rightarrow 제10조의2제3항제2호].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안 제출 전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한 기본 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안건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⁶⁾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u>의무적으로 인증(</u>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중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중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법제처)

-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 제2호"를 각각"제10조의2제3항제2호"로 수정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 ₩.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 ₩.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IX.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1657

제안연월일 : 2024년 2월 27일

제 안 자: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는 상위법의 조항을 인용함에 있어 보편적・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① 상위법 조항의 제목까지 기재하였고 ② 조·항·호를 붙여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띄어 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통일성과 자구의 체계성 측면에서 수정함.

2. 주요내용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 제2호"를 각각
 "제10조의2제3항제2호"로 수정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3항 제2호"를 각각 "제10조의2제3항제2호"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		
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건	1	1
축물 중 <u>신설</u> (「공유재	<u>「장애인·노</u>	「장애인·노
산 및 물품 관리법」제7	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인·임산부 등의 편의증
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진 보장에 관한 법률」	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함한다)ㆍ이설 및 전면	생활환경 인증) 제3항 제	따른 인증 의무대상 공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	공건축물 포함한다)
	<u>상 공공건축물 포함</u>	
	<u>한다</u>)	
2. 교육감의 지도・감독	2	2
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		
축물 중 서울특별시교	설치하는 「장애인・노	설치하는 「장애인・노
육청의 재정지원을 받	인·임산부 등의 편의	인·임산부 등의 편의
아 <u>신설·이설 및 전면</u>	증진 보장에 관한 법	증진 보장에 관한 법
<u>개축하는</u> 공공건축물	률」제10조의2(장애물	률] <u>제10조의2제3항제2</u>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	<u>호</u> 에 따른 인증 의무대
	3항 제2호에 따른 인증	상
	<u> 의무대상</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신설"을 "「장애물·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 공공건축물"로, "포함한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을 "설치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	제3조(적용범위)
로 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중 <u>신설</u>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법」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u>포함한</u>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인
다)·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u>중 의무대상 공공건축물 포</u> 함한다)
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	2
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u>신설·이설 및 전면 개</u> 축하는 공공건축물	설치하는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